

GGWF REPORT 2023-13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기준 연구

연구책임 | 유정원 (경기복지재단 연구위원)

공동연구 | 강보민 (경기복지재단 연구원)



경기복지재단
GYEONGGI WELFARE FOUNDATION

■ GGWF Report는 사회복지분야의 주요현안에 관하여 정책의 방향설정과 실현에 도움을 주고자, 연구·조사를 통한 정책제안이나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자 작성된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는 경기복지재단의 공식적인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과 관련한 의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el : 031-267-9363 Fax : 031-898-5937 E-mail : voiced@ggwf.or.kr

요약

□ 연구목적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이용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격 기준 마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전담 보호하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연구방법

- 중증장애인 판정에 활용되는 공식자료와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장애유형별 장애인단 등급판정기준, 중증발달장애인 선별 매뉴얼 등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운영시설과 타 시도 사례 분석
 - 2021년부터 연속적으로 운영하거나 2023년 신규로 전담반을 운영하게 된 시설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 관련 사업 운영 내용 및 이용자 대상 선정기준 검토

□ 연구결과 및 제언

- 경기도 내 발달장애인, 뇌병변장애인 전담반 입소기준 마련
 - 일상생활 영역, 식생활 영역, 의사소통 영역, 도전적행동 영역을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리스트 형태로 완성하고 총 점수에 따라 전담반 입소를 결정할 수 있는 점수표 완성
 - 경기도 내 주간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조건을 판단하는데 쓰일 수 있음
 - 점수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졌으나 가중치 부여 및 내용의 구체성 확인을 위해 현장과의 논의를 통해 활용될 수 있음
- 시설현황, 장애인 대기현황, 접근성 등의 기본정보와 함께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목차

I | 연구개요 / 1

- 1. 연구배경 및 목적 1
- 2. 연구방법 3

II | 경기도 중증장애인 복지사업 / 5

- 1.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5
- 2.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8
- 3. 타 시도 사례 32
- 4. 시사점 38

III | 경기도 중증장애인전담반 입소기준 / 41

- 1.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기준 41
- 2. 활용방안 및 제언 51

| 참고문헌 / 53

표 차례

〈표 II-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 기준	9
〈표 II-2〉 시군별 장애인과 주간보호시설 현황	10
〈표 II-3〉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조건	12
〈표 II-4〉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운영 현황	13
〈표 II-5〉 선정방법 예시	15
〈표 II-6〉 시설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기준	16
〈표 II-7〉 K-ADL 항목과 내용	19
〈표 II-8〉 K-IADL 항목과 내용	20
〈표 II-9〉 ICF 기반 중증 발달장애인 평가도구(선별검사)	21
〈표 II-10〉 Eyberg 문제행동 검사	23
〈표 II-11〉 행동장애 강도 판정기준표	25
〈표 II-12〉 수정바델지수 점수표	26
〈표 II-13〉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27
〈표 II-14〉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28
〈표 II-15〉 서울시 낮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33
〈표 II-16〉 낮활동사업 참여대상 선정기준 예시	34
〈표 II-17〉 부산시 중증발달장애인 진단 검사표	35
〈표 II-18〉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비교	37
〈표 II-19〉 현재 사용 중인 입소기준과 내용	38
〈표 III-1〉 일상생활 영역	43
〈표 III-2〉 식생활 영역	44
〈표 III-3〉 의사소통 영역	45
〈표 III-4〉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	46
〈표 III-5〉 일상생활 영역	47
〈표 III-6〉 식생활 영역	48
〈표 III-7〉 의사소통 영역	49
〈표 III-8〉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	50

그림 차례

〈그림 II-1〉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현황	6
〈그림 II-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목표와 과제	7

I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 경기도 중증장애인전담반 운영 기준 미흡

- 경기도는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는 돌봄이 어렵고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에 전담반을 지정하고 있음
 - 이용 장애인당 사회재활교사 비율을 기존 4대 1(2023년부터 3대 1로 변경)을 적용하고 있으나 전담반의 경우 이용자 4명당 2명의 재활교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지원근거는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비용의 지원)
- 도내 설치·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 중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20개소)에 중증장애인전담반을 지정하고 있으나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 중 1:1 돌봄이 필요한 이용자를 우선 선정함
- 경기도는 전담반 운영시설을 점차 확대할 방침으로 있으나 현재의 선정기준은 모호하다는 것이 문제
- 개소 당 인건비와 환경개선비(개소당 55,000천원, 도비 10%/시군비 90%)를 지원하게 되므로 전담반을 운영하지 않는 시설과의 형평성에 대한 반론과 선정기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음
- 심사기준 심사평가표에 따라 서류심사에서 20점 이상 취득한 시설에 지원하고 있음

구분	심사항목	배점
시설의 수행역량 평가	○ 시설의 사업 수행역량 - 기존 시설 운영역량, 전담반 운영 공간 등	10
운영계획 평가	○ 사업의 계획성 - 인력지원 필요성, 전담반 운영계획 및 환경개선 방안 등 ○ 사업의 실현가능성 - 운영목표, 운영 프로그램, 이용대상 선정계획, 세부예산	20
기타	○ 운영법인의 자부담 또는 시군의 추가지원(보조지원인력 등) ○ 유관기관 연계 및 외부자원 활용	10
합 계		40

자료 : 경기도 내부자료(2023)

- 시설에서는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보건복지부 고시, 2019)를 활용, 장애 정도에 대한 점수를 산정하여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시설 내 담당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존하고 있음
- 그러나 이는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 영역이 제한적이며 실제 시설 내에서 돌봄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이용자 당사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시·군별로 시설이 중증장애인을 수용하는 전담반 운영을 신청하였을 때 심사절차 및 이용자 선정에 활용할 수 있는 지표 또는 기준을 필요로 함

2) 연구의 목적

□ 전담반 이용을 위한 중증장애인 자격 기준 마련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을 전담 보호하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할 때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경기도와 시·군의 입장에서는 시설이 전담반 이용자를 선정하는데 그 대상에 대한 공정성과 타당성 부여를 확인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역할
 - 시설의 입장에서는 전담반을 운영·유지해야 할 필요성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는 중증장애인 선별 도구로서 활용 가능
 -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밀착 돌봄(1:1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정당성을 확보하는 방안으로서 수치화된 객관적 기준을 만족하는지 증명 가능

- 발달장애인 뿐만 아니라 타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판단지표 제작이 필요함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돌봄과 보호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과 신변처리 등 밀착 돌봄이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을 포괄하는 전담반의 확대를 위한 정책제안을 담고자 함

3) 주요 내용

□ 중증장애인 변별 기준 제공

- 자기보고식 평정척도를 사용할 수 없는 발달장애인을 비롯하여 유형별 장애정도를 변별할 수 있는 기준
 - 기존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중증발달장애인 선별검사 채점기준과 유사한 형태
 - 객관적이며 체계적인 진단평가 도구의 부재에 따른 오류를 최소화하고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사업지침에 반영할 수 있는 지표 도출
 - 경기도 중증장애인 관련 사업대상자 선별을 위한 준거로 활용 가능

2. 연구방법

1) 문헌 연구

□ 선행연구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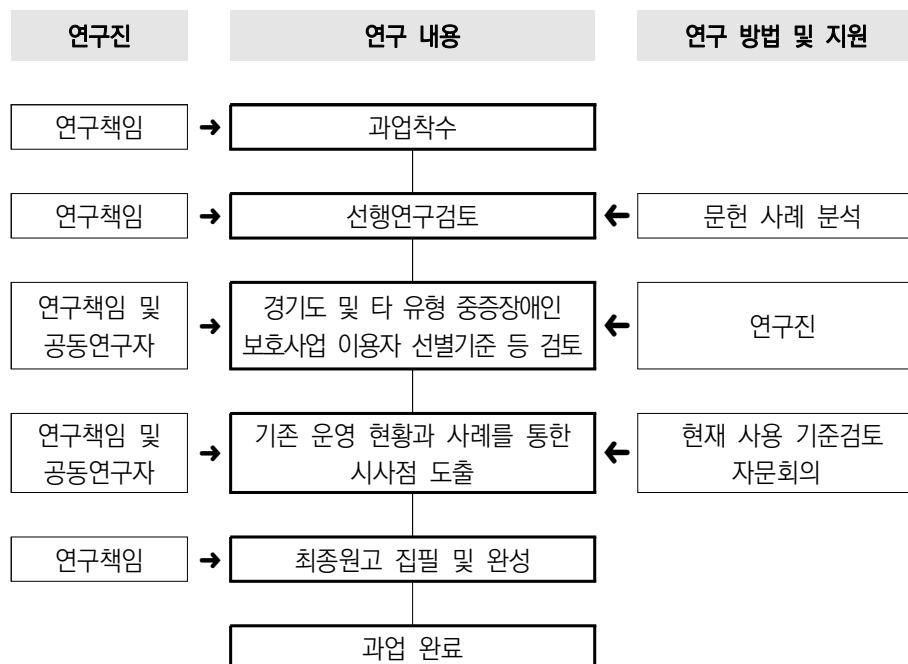
- 장애인등급 판정기준(2018년 고시), 중증장애인 선별검사 채점기준(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확인 고시 등 장애인 판정에 활용되는 공식자료와 선행연구 검토
 -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 방법에 관한 고시
 -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등급판정기준
 - ICF 기반 중증발달장애인 선별·평가 매뉴얼

2) 사례분석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시설과 타 시도 사례 분석

- 경기도 내 시·군에서 기존 운영시설의 입소대상자 선별기준 확인
 - 운영자 및 현장관계자 자문회의 진행
 - 2021년부터 연속적으로 전담반을 운영하는 시설과 2023년 최초로 전담반 운영을 시작하는 시설 대상으로 운영상 문제점 또는 어려운 점과 향후 기대에 대한 의견수렴
 - 서면자문
 -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 운영 시설대상 입소기준 초안에 대한 자문을 받아 수정·보완에 참고하였음
- 서울시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 이용자 : 종사자 = 2명 : 1명, 장애인복지관 내 낮활동 전담인력 배치
- 부산시 중증장애인진단과 주간보호시설 시스템

□ 연구흐름도



Ⅱ 경기도 중증장애인 복지사업

1.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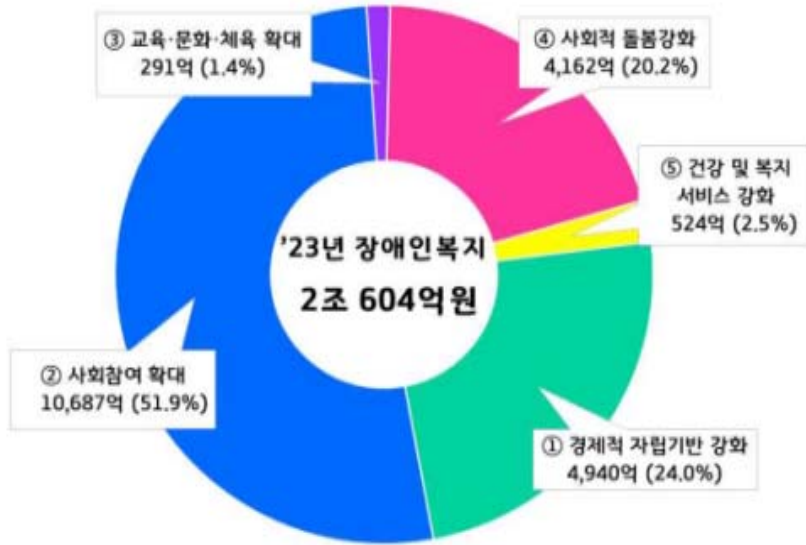
□ 분야별 사업현황¹⁾

- 경기도 장애인복지 사업은 「경기도 장애인복지 기본조례」²⁾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이와 함께 중앙정부의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참고하여 주기를 일치시킴
 - 중앙의 종합계획에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등급제 폐지와 맞춤형 서비스 제공에 따른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도록 권고함
 - 장애인 권리의식에 기반한 다양한 복지수요의 급증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 경기도에는 전국 265만명 장애인 중 약 22%가 거주하고 있음
- 경기도의 장애인복지 비전은 “장애인이 편안하고 행복한 ‘기회의 경기도’로 설정하고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중점과제를 추진 중에 있음”
 - 세부사업은 23년 현재 108개로 22년 대비 9개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추진부서는 10개 실·국, 16개부서가 참여하고 있음
- 경기도는 분야별 5대 정책 중심으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사회적 돌봄강화” 영역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지원이 포함됨
 - 장애인 사회적 돌봄강화 영역은 경기도 장애인 대상 사업 19개 사업에 포함됨
 - 돌봄서비스 대한 요구는 2017년 40.1%에서 2018년 45.3%로 증가하고 있으며 요구사항은 소득(48.9%)→의료(27.9%)→주거(7.4%)→고용(3.6%) 등으로 나타났음

1) 경기도 내부자료(2023). 경기도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1~’23)에서 참고

2) 2002년 5월 제정

〈그림 II-1〉 경기도 장애인복지사업 예산현황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2023)

- 경기도 장애인복지 총 예산은 2조604억원('23년 기준)이며 전년 대비 약 2,940억원이 증가한 금액임
-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영역에는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지원을 비롯한 취업과 일자리 확충 관련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음
 - 장애인 누림통장, 장애인 스마트산업 취업지원, 장애인 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등
- 사회참여확대 정책영역에는 자립전환지원 조직강화,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 장애인 자립생활 주택 확대 등 장애인이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들이 포함됨
 -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특별교통수단 확대, 장애인 편의 증진,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등
- 교육·문화·체육 확대 영역에서의 사업은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등 문화예술진흥 사업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음
 -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장애인 성교육 지원 등
- 사회적 돌봄 강화 정책에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장애인 365쉼터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등 시설운영과 관련한 사업들이 있음
 -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고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장애인 가족지원,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등

- 건강 및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은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소수장애인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 등 수가 적은 유형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 포함됨
-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장애인 공공입대주택 공급 확대, 재난발생 시 장애인 대응체계 마련, 장애아동 재활 지원, 장애아동 보호 등

〈그림 II-2〉 경기도 장애인복지 정책목표와 과제

정책목표	중점과제	일반과제
① 경제적 자립 기반 강화	①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환경 조성 지원 ② 장애인 누림통장 *경기도 장애인 기회소득(신규) ③ 장애인 스마트산업 취업 지원	④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률준수 ⑤ 장애인 기업제품 판매 활성화 ⑥ 장애인 일자리 확충 ⑦ 장애인 맞춤형 민간일자리 제공 ⑧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신규) ⑨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② 사회참여 확대	① 자립전환지원 조직 강화 ②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강화 ③ 저상버스 확대 * 시내버스 교통카드단말기 위치 표준화(신규) ④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확대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 통합체계 구축(신규) ⑤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지원 ⑥ AAC 마을 만들기 ⑦ 장루·요루 장애인을 위한 화장실 설치 ⑧ 소수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	⑨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확대 *경기도형 장애인 지원주택 추진(신규) ⑩ 장애인 편의 증진 *보도육교 내 엘리베이터 설치(신규) ⑪ 장애인 인권 침해 방지 기반 확대 ⑫ 장애인단체 활성화 지원
③ 교육·문화·체육 확대	① 경기도형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확대(신규) ② 장애인을 위한 체육시설 및 프로그램 강화 *스포츠 소외계층 관람 기회 확대(신규) ③ 장애예술인 활동 지원	④ 장애인 문화예술진흥사업 *장애인학교 등 문화예술시설 지원(신규) ⑤ 장애유형별 장애인 평생교육 체계 구축 ⑥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 ⑦ 장애인 성(性)교육 지원 ⑧ 경기도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④ 사회적 돌봄 강화	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중증 전담 포함) 운영 ② 장애인 365쉼터 운영 ③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 지원 *최중증발달장애인 24시간돌봄 실태조사(변경)	④ 고령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제공 ⑤ 장애인 가족 지원 ⑥ 발달장애인 당사자 및 가족 지원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지원체계 구축(신규) ⑦ 장애인 거주시설 지원 ⑧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⑤ 건강 및 복지 서비스 강화	① 공공어린이 재활의료기관 운영 추진 ② 뇌병변장애인 위생용품 지원 ③ 소수장애인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서비스 ④ 맞춤형 장애인 상담 지원 ⑤ 장애인 공공입대주택 공급 확대 ⑥ 재난발생시 장애인 대응체계 마련	⑦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권 향상 ⑧ 여성장애인 맞춤형 지원 ⑨ 장애아동 재활 지원 ⑩ 장애아동 보호 ⑪ 경기도 장애인복지 종합지원센터 운영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2023). 경기도 장애인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1~'23)

2.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현황

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6조(중증장애인의 보호), 제81조(비용 보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 필요한 보호 등을 평생 받을 수 있도록 알맞은 정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도지사는 실태조사 후 중증장애인 전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0. 5. 19)
 - 도지사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사업목적

-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³⁾
 -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경감과 삶의 질 향상시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장비를 지원⁴⁾함
 - 지원내용은 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환경개선비 지원 및 중증장애인전담반 운영지원(추가 인건비, 환경개선비 등)

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고

4) 경기도 장애인복지과 사업개요

□ 인력지원 및 자격기준

- 보건복지부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에 따르면 주간보호시설의 종사자 배치기준은 이용장애인 3인당 1인의 사회재활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있음
 - 재활치료를 위한 사회재활교사를 치료사(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재활상담사 등) 및 특수교사로 채용할 수 있음
 - 장애인복지시설에 복합설치되어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은 관할 시·군 승인하에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장 또는 해당 시설의 직원이 겸임 가능
 - 단독시설로 운영하는 주간보호시설의 시설장(타 시설의 장을 겸직하지 않음)이 상근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여야 함

〈표 II-1〉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인력 기준

직종별	비 고
시설장	· 시설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설운영 현황에 따라 타 시설과 겸임할 수 있다)
사회재활교사	· 이용장애인 3인당 1인 배치
사무원	· 시설당 1인 (지자체 협의)
기능직	·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능직 1인 (단, 다른 직종이 겸직하는 경우 사회재활교사로 대체 배치 가능)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시·군별 시설운영 현황

- 중증장애인 전담반은 전체 시설 중 20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유형은 뇌병변장애인, 발달장애인이 가장 많음
 -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151개소에 2,825명이며 종사자 현원은 1,071명임
 - 장애 유형은 매우 다양하지만 특히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은 문제행동이나 단독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이 주 대상임
 - 지적장애인 1,723명, 자폐성 장애인 602명, 뇌병변장애인 33명
 - 이들은 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정도의 장애와 행동적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중증장애인 전담반은 그 중에서도 더 밀착한 돌봄을 요구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22년 말 현재 141개소(경기도 남부 111개소, 북부 30개소)를 대상으로 총 53,134,140천원의 사업비로 시설을 운영하였음
 - 도비 5,313,414천원, 시군비 47,820,725천원으로 부담비율은 경기도 10%, 시군 90%

○ 시군별로는 최소 1개소에서 최대 13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별 등록장애인 수와 비례하는 것은 아님

- 시설이 가장 많은 안산시의 장애인 수는 33,276명이며 그 중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는 인원은 총 212명으로 10개소의 시설에 230명이 이용하는 고양시와 비교해보면 차이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지역별 시설 수, 유형, 이용자 수, 종사자 현황 등으로 고려하여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을 확대하는 조건으로 고려해야 할 것임

〈표 II-2〉 시군별 장애인과 주간보호시설 현황

(단위 : 개소, 명)

시군	시설 수	장애인 수	이용자		이용자 장애유형										종사자		중증 전담반 운영 여부
			정원	현원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		정신	중복	기타	정원	현원	
										지적	자폐						
계	151	584,834	3,346	2,825	16	333	2	5	6	1,723	602	12	118	8	1,107	1,071	-
수원시	11	44,033	405	352	1	30	-	1	-	210	84	-	26	-	145	141	-
용인시	9	37,372	189	149	1	32	-	-	-	80	29	-	7	-	57	59	2개소
고양시	10	42,689	290	230	-	21	-	-	-	116	84	-	9	0	98	98	2개소
성남시	10	36,091	303	263	-	22	-	-	-	192	40	-	8	1	92	84	-
화성시	8	31,196	180	142	2	12	-	-	-	111	16	-	-	2	48	48	3개소
부천시	11	37,692	195	185	-	21	-	-	-	107	45	-	12	-	65	65	1개소
남양주시	5	33,273	86	78	1	15	-	-	5	43	6	4	4	-	36	33	-
안산시	13	33,276	266	212	-	48	-	-	-	131	32	-	1	-	84	86	1개소
평택시	8	25,931	187	148	2	3	-	-	-	110	20	-	9	4	66	61	-
안양시	8	21,330	136	122	1	24	-	1	-	63	29	-	4	-	44	42	4개소
시흥시	5	22,125	78	68	-	13	-	-	-	38	14	-	3	-	26	26	-
김포시	5	18,718	113	91	2	16	2	1	-	49	16	4	1	-	38	34	1개소
파주시	4	22,409	90	79	-	2	-	-	-	48	27	-	2	-	25	25	-
의정부시	2	22,470	50	39	-	2	-	-	-	34	2	-	1	-	18	16	-
광주시	4	17,340	88	68	1	21	-	-	1	38	3	1	3	-	24	23	-
광명시	3	12,638	58	59	-	-	-	-	-	10	49	-	-	-	17	17	1개소
하남시	3	12,005	54	48	-	-	-	-	-	34	4	-	10	-	21	21	1개소
군포시	5	11,718	77	70	-	6	-	-	-	37	22	-	4	1	26	25	-

(단위 : 개소, 명)

시군	시설 수	장애인 수	이용자		이용자 장애유형										종사자		중증 전담반 운영 여부
			정원	현원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발달장애		정신	중복	기타	정원	현원	
										지적	자폐						
오산시	2	8,916	33	30	-	3	-	-	-	24	3	-	-	-	9	9	-
양주시	3	12,955	37	34	1	1	-	-	-	27	5	-	-	-	18	17	-
이천시	3	10,924	62	43	-	1	-	1	-	29	11	-	1	-	22	21	-
구리시	2	8,546	25	29	1	7	-	-	-	17	4	-	-	-	10	10	-
안성시	2	11,216	44	48	-	2	-	-	-	33	9	-	4	-	15	16	-
의왕시	3	6,559	75	52	-	10	-	-	-	32	5	1	4	-	29	28	-
포천시	2	10,413	41	36	3	5	-	-	-	22	3	-	3	-	16	14	1개소
양평군	3	8,143	50	39	-	1	-	-	-	27	9	1	1	-	18	13	-
여주시	3	7,553	51	36	-	5	-	1	-	21	7	1	1	-	19	19	3개소
동두천시	1	6,429	30	23	-	-	-	-	-	20	3	-	-	-	5	5	-
과천시	2	2,257	41	38	-	8	-	-	-	13	17	-	-	-	12	12	-
가평군	1	5,179	12	10	-	2	-	-	-	7	1	-	-	-	4	3	-
연천군	0	3,438	0	0	-	-	-	-	-	-	-	-	-	-	0	0	-

*이용자 장애유형 : 중복(뇌병변+지적)

출처 : 경기도 내부자료(2023), KOSIS 국가통계포털

□ 시설 이용조건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기준은 각 시설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르며 대부분은 지역사회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연령이나 이용유지 기준을 제한하지 않고 있음
 - 시설이 위치한 지역의 거주 장애인의 장애유형, 이용연령, 이용기간과 상관없이 장애인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음
 - 공통적인 이용조건은 거주 여부, 등록장애인 여부와 타 시설에서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 등이 있음. 즉,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등 추가 인원을 배치하여 전담돌봄을 하지 않는 이용인들 대부분이 중증장애인에 해당됨

〈표 II-3〉 지역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조건

기관 소속지역		주간보호센터 이용조건
A시	A1	• A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만 40세미만의 뇌병변, 발달장애인 • 관찰적응 기간을 통해 자해 및 공격행동, 성적행동, 도벽 등의 문제행동이 없어 단체생활에 적합한 것으로 판정되는 자 • 건강진단(1개월 이내 검진)을 받은 후 전염성 질환 및 질병이 없는 자
	A2	•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및 뇌성마비 장애인 • A시 거주자
B시		• B시 거주 장애인 • 주간보호센터 담당자 관찰평가와 평가도구를 이용한 평가 실시 • 평가 및 판정회의 절차 : 접수예약, 초기상담, 진단, 현장평가, 최종평가
C시		• C시 거주 장애인 • 만 6세 이상 45세 이하 등록장애인
D시	D1	• D시 거주 장애인 • 20대 등록장애인
	D2	-
E시	E1	• E시 거주 장애인 • 만 18세 이상 성인 등록장애인
	E2	• E시 거주 장애인 •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중증장애인
	E3	• E시 거주 장애인 • 적응기나 1개월을 두고 입소여부 판단
F시		• F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성인 발달장애인
G시		• G시 거주 장애인 • 만 18세 이상 뇌병변장애인으로 휠체어를 사용하고 기저귀를 착용하는 자 • 일상생활이 가능한 뇌병변장애인 • 섭식장애가 있는 뇌병변장애인 • 타 시설 이용을 거부당한 뇌병변장애인
H시	H1	-
	H2	• H시 거주 만 18세 이상 만 50세 미만 중증장애인
	H3	• 개인생활평가표를 통한 평가
	H4	• H시 거주 18세 이상 45세 미만 중증성인 발달장애인 • 공동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자 • 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자녀 우선 입소
I시	I1	-
	I2	-
J시		-
K시		• 만 18세 이상 K시 거주 등록 발달장애인 • 신변처리(이동 및 대소변처리)가 가능하고 적응행동 상 문제가 없는 경우 • 자해행동 및 타인에 대한 지나친 공격성을 나타내지 않는 자 • 전염성 질환이 없는 자
L시		• L시 거주 성인 발달장애인

*기관별 기준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운영하는 기관의 기준을 수집한 내용임
 - 표시는 이용기준이 없음

2) 중증장애인주간보호 전담반 현황

□ 전담반 개요⁵⁾

- 기존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내 중증장애인 전담 보호를 위한 “중증 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을 지정하여 이용장애인 4명당 사회재활교사 2명이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는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는 돌봄이 어렵고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에 전담반을 지정함
 - 대상은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운 주간보호시설이며 이용장애인당 사회재활교사 비율을 4:1에서 4:2로 상향 지원함
 - 도내에 설치·운영 중인 주간보호시설 중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정에 따라 중증장애인 전담반 설치·운영
 - 도전적 행동이 심한 발달장애인의 경우 1:1 돌봄도 감당이 어려운 실정으로 전담반을 설치, 2:1 지원 효율성 제고
 - 사업비는 인건비와 환경개선비로 개소 당 5,500만원을 추가 지급함

〈표 II-4〉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운영 현황

번호	시군	시설명	지정연도
1	고양시	고양시장래인주간보호센터	2021
2		고양시덕양행신장애인주간보호센터	
3	광명시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4	김포시	김포시장래인주간보호센터	2021
5	부천시	서로나눔주간보호센터	2023
6	용인시	다솜의 집	2022
7		용인시 처인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8	안산시	행복한길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1
9	안양시	안양시수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2
10		희망아카데미장애인주간보호센터	
11		안양시만안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12		안양시관악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5) 경기도 내부자료(2023). 2023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선정계획 참고

번호	시군	시설명	지정연도
13	여주시	상생주간보호센터	2022
14		여주시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15		여주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16	하남시	하남시장애인복지관 부설 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3
17	화성시	아르딤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1
18		동탄아르딤장애인주간보호센터	
19		와~우리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	포천시	포천시장애인주간보호센터	2022

○ 발달장애인을 포함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다른 유형의 최종증장애인⁶⁾을 대상으로 함

- 일상생활, 여가활동 지원, 교육·훈련, 지역사회적응활동, 특별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개발, 실습생 교육지도 및 추가종사자를 통한 ‘중증장애인전담반’ 구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돌봄 비율로 어려운 이용자에 대한 집중 돌봄 실시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 전담반은 기존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는 이용자 중에서 신규인원으로 모집하여 전담반에 입소시키는 방법을 택하고 있음
- 이용대상 선정은 기존 이용자 인원 중 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②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경험에 있는 장애인 또는 그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③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 약물 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④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는 돌봄이 어려운 경우

6) 최종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 중증전담반의 선별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시설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 시군과 경기도에 전담반 운영을 신청하여 대상자 선정 후, 지원과 함께 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음

〈표 II-5〉 선정방법 예시

기 존 인 원	신 규 인 원
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①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②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②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③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③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
④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지표 증빙	④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경기도에서 신규 전담반 신청을 받을 때 예시로 제시하는 기준은 기존이용인 선정과 신규모집 인원의 기준으로 나누어 제시하고 있음
 - 경기도지사를 제출 대상으로 하는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사업 신청 서류에는 전담반 이용인원을 선정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전담반 사업의 취지는 주간보호센터를 이용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도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전담인력 확보와 관련 시설 개선을 돕는데 있음
 - 시설현장에서는 이들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최중증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정의나 개념은 없음
- 이용대상 장애인 선정 원칙은 중증전담반 지정을 위해 기존 이용인원 퇴소 후 기준을 충족하는 중증장애인을 모집하는 것은 불가능함
 - 기존인원과 신규모집인원을 구분하여 중증전담반 이용장애인 선정계획을 수립하며 기존인원으로 전담반을 운영할 때는 해당 인원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필요로 함
 - 그러나 어떤 기준으로 전담반 인원을 선정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준을 주어지지 않으므로 시설별로 나름의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해당되는 인원을 입소시킴
 - 높은 수준의 기준이나 표준화되어있지않으며 시설별로 결정사용함

〈표 II-6〉 시설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기준

기관 소속지역		인원		이용인 모집방법	이용인 평가방법	주간보호 전담반 입소기준
		정원	현원			
A시	A1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사회교육 목표지, 생활인지	• 뇌병변과 뇌전증 중복장애(언어, 청각장애 포함) • 자해를 수시로 하는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 일상생활 100% 지원대상자(기저귀, 섭식 등) • 몸무게 50kg 이상(2인1조 트랜스퍼) • 중증 정신자폐(대소변 조절 및 섭식충동장애 등)
	A2	-	-	-	-	-
B시	B1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도전적행동에 대한 판정기준표, 동기사정척도, 행동기능질문지	• 심한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는 경우 • 다양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운 경우 • 다양한 도전적 행동 및 정신과적인 문제로 인해 약물 복용이 필요한 경우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 및 활동지원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경우
	B2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도전행동 사정점검표	• 강도행동장애판정기준표
C시	C1	4	4	①센터 이용인 중 선발: 3명 ②공개 모집: 1명	활동지원 점수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빙 • 건강상태가 이용에 적합한 장애인(시각장애인, 전염성 질환자는 제외)
	C2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행동장애 강도 판정기준표, 입소평가 관찰일지 확인	• 강도행동장애판정기준표
	C3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행동장애정도 판정기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 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빙

기관 소속지역		인원		이용인 모집방법	이용인 평가방법	주간보호 전담반 입소기준
		정원	현원			
D시		-	-	-	-	-
E시		4	4	①센터 이용인 중 선발: 2명 ②공개 모집: 2명	동기사정척도, 양육부담척도, Eyberg, 면담	• 19세 이상 도전적 행동(어려운 행동)을 하는 성인기 최종증발달장애인 • Eyberg 행동검사지, 점수 127점 이상, 문제행동유형 11개 이상 • 지역 내 발달장애인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거부 경험으로 가정 내 고립 • 보호자 및 이용인 면담을 통한 어려운 행동 관찰과 확인 • 선정근거자료: 면담자료(Eyberg 검사지, 초기면담지(보호자), 어려운 행동 기능분석선별도구(FAST), 양육스트레스 평가지, 관찰면담지
F시	F1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강도행동장애 판정표	• 강도행동장애판정기준표
	F2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행동발달, 일상생활능력 평가	•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이 심한 이용인으로 약물 복용 등에 대한 의사소견서 제출 • 자해 및 이탈행위로 1:1 케어가 필요한 이용인(모든 일상생활이 도움을 통해 가능)
	F3	-	-	-	-	• 강도행동장애판정기준표
	F4	-	-	-	-	-
G시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동기사정척도	• 정신과 약물 복용 의사소견서가 있는 이용인 • 타기관에서 입소 거부 경험 이용인 • 도전적행동으로 인한 1:1 밀착케어가 필요한 이용인(생활일지 기준)
H시		-	-	-	-	•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한 발달장애(지적·자폐성) 등 장애판정을 받은 이용인 • 만 18세 이상 성인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타 기관 또는 타 프로그램 참여에 어려움을 겪은 이용인 • 법정전염병 규정 중 전염성 질환이 없는 이용인 • 서류제출 시점 H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이용인(신청일 기준 최소 6개월 이상 거주지 등록자)
I시		-	-	-	-	• 만 18세 이상 I시 거주 장애인 등록자 중 도전적 행동을 하는 최종증 성인발달장애인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현재 가정에서

기관 소속지역		인원		이용인 모집방법	이용인 평가방법	주간보호 전담반 입소기준
		정 원	현 원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 • Eyberg 행동평가결과 심도점수 127점 이상 •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있 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 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다는 의사 소견서(의료적인 질환 및 정신과적 인 문제가 큰 경우, 대상자 선정 시 제외될 수 있음) •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 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동일 요건의 경우, 연령이 많은 자로 선정 • 선정근거자료: 면담기록지, 도전적행동의 동기사정 척 도, Eyberg 행동검사,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합사정 평가표, 개인관찰평가서(진단용, 재평가용)
J시		4	3	센터 이용인 중 선발	행동장애 강도, Eyberg 문제행동 검사, 장애인활동 지원 서비스 평가점수	-
K시	K1	4	4	센터 이용인 중 선발	도전적행동 기록지	•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종합점수 400점 이상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 응하지 못한 경험이 있는 장애인 • 자·타해의 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 정신과적 약물 복용이 유지되고 일상생활 이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 • 이외의 도전적 행동 등으로 기존 사회재활교사 비율 로 돌봄이 어려움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증빙
	K2	4	3	①센터 이용인 중 선발: 2명 ②공개 모집: 1명	동기사정척도	-
	K3	-	-	-	-	-

*기관별 기준은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전담반을 운영하는 기관의 기준을 수집한 내용임
 - 표시는 이용기준이 없음

(1) 현행 전담반 입소대상자 선정 참고자료

① 발달장애인 중증장애인

□ 일상생활 수행능력 (ADL : Activities of daily living)

- ADL은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활동에 대한 평가로 자기 자신을 돌보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일상에서 개인관리 활동 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도구
 - 국제표준 ADL은 각 항목을 평가하여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주요 내용은 목욕하기, 옷갈아입기, 식사하기, 앉기, 걷기, 화장실 이용하기 등 기본적인 일상 활동을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지표임
 - 우리나라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반영하고 사용하고 있음
 -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상생활 수행능력의 평가는 ADL을 기본으로 하여 우리나라의 생활환경이나 문화에 맞도록 수정하여 개발한 K-ADL을 사용

〈표 II-7〉 K-ADL 항목과 내용

항목	상세	도움없이 스스로 가능	부분적 도움 필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옷입기	내복, 외투를 포함한 모든 옷을 옷장이나 서랍에서 꺼내어 챙겨입고, 단추나 지퍼를 채우기			
세수하기	세수, 양치질, 머리감기			
목욕하기	욕조에 들어가서 목욕하거나 욕조에 들어가지 않고 샤워하기			
식사하기	음식이 차려져 있을 때 혼자서 식사를 하는 것			
이동	집자리에서 벗어나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 것			
화장실 사용	대소변을 보기위해 화장실을 가는 것과 대소변을 본 후 닦고 옷을 추려 입는 것			
대소변	대소변을 참거나 조절하는 능력			

*출처 : 이상봉 외 (2021), J.W.Won 외(2002)

□ 수단적일상생활동작(IADL :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 IADL은 독립적인 생활과 관련된 활동으로 사회에서 기능을 할 때 필요한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사용됨

- 주로 질병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환자 자신을 돌볼 능력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며 초기 질병을 가진 사람을 평가하는데 유용함

〈표 II-8〉 K-IADL 항목과 내용

항목	상세	도움없이 스스로 가능	부분적 도움필요	전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
몸 단장	빗질, 면도, 손/발톱 깎기 포함			
집안일	실내청소, 설거지, 침구정리, 집안 정리정돈 등			
식사준비	음식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고, 상을 차리는 것			
빨래	손빨래 혹은 세탁기 이용 후 말리는 것			
근거리 외출	교통수단을 이용하지 않고 가까운 상점, 병원, 관공서 등을 다녀오는 것			
교통수단 이용	대중교통을 이용하거나 운전을 하여 먼 거리를 다녀오는 것			
물건사기	상점에 갔을 때 필요한 물건을 결정하고, 돈을 지불하는 능력			
금전관리	용돈, 통장관리, 재산관리			
전화사용	전화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거나 전화를 받는 것			
약 복용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양의 약 먹기			

- ADL과 IADL 항목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에 그대로 반영되어 사용되고 있음
 - 일상생활활동 측정도구는 삶의 기본적인 생활 기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노인의 기능 평가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임
 - 노인의 기능평가를 위해 개발된 지표는 신체적·정신적 기능에 장애가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기능장애를 수집하고 전문가들이 타당성을 검증하였음
 - 이를 장애인 분야에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일부 공통적인 부분이 있으나 중증장애인을 진단하는 지표로 단일하게 사용하기는 어려움

□ 기능·장애·건강 분류 (ICF :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⁷⁾

- ICF는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장애에 대한 진단평가 도구로서 기능·장애·건강 분류임
 - ICF는 개인의 건강관리와 사회적 장애요인에 제거나 완화 및 사회적 지지와 촉진요인의 제공을 장려하여 예방, 건강 증진 및 참여 향상과 같은 개인의 건강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에 개념적 체계를 제공함
 - 기능수행과 장애의 요소 : 신체요소는 두 가지 분류 즉, 신체계통의 기능과 구조로 구성됨
 - 활동과 참여 요소 : 개인 및 사회적 관점에서 기능수행의 측면을 나타내는 영역을 포함
 - 장애, 제한 또는 제한(문제없음, 0~4%) 1(경미한 문제5~24%), 2(보통 문제 25~49%), 문제 50~95%), 4(전체문제 96~100%)를 코드화함

〈표 II-9〉 ICF 기반 중증 발달장애인 평가도구(선별검사)

영역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학습과 지식의 적용	얼굴 표정이나 몸짓 모방하기					
	같은 크기, 모양, 길이 짝짓기					
	1에서 10까지 수 세기					
	자기이름, 간단한 단어 쓰기					
이동	혼자서 익숙한 실내 장소 걷기					
	익숙한 거리나 도로, 신호 없는 교차로 혼자 건너기					
	집에서 400m 내에 있는 장소에 혼자 가기					
	집에서 400m 이상 떨어진 곳을 혼자서 또는 다른사람과 함께 가기					
자기 관리	신체 일부 씻기					
	안전한 음식과 위험한 음식 구별하기					
	날씨를 고려하여 적합한 옷차림을 선택하고 유지하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가정 생활	간단한 집안 청소하기					
	위험할 수 있는 도구 조심히 다루기					
	가전제품 사용하기					
	집안의 쓰레기 처리하기					

7)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6), ICF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영역	문항 내용	①	②	③	④	⑤
의사 소통	문장 수준으로 상황이나 느낌 표현하기					
	상대방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					
	대화 시작하고 끝맺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대인 상호작 용과대인 관계	적절한 표현으로 요구하거나 부탁하기					
	친숙한 사람과 이야기 주고받기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하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절지키기					
지역 사회 생활	자신이 좋아하는 여가활동 하기					
	가족들과 여행하기					
	친구와 함께 시간보내기					
	종교 활동에 참여하기					
일과 경제 생활	직업 기술 배우기					
	작업 내용 순서를 기억하고 혼자 수행하기					
	정해진 규칙 지키기					
	정해진 시간만큼 꾸준히 일하기					
문제 행동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행동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특이한 행동을 반복적으로 하기					
① 스스로 수행 가능 ② 경도 도움 필요 ③ 중증도 도움 필요 ④ 중도 도움 필요 ⑤ 항상 도움 필요						

*출처 : 우성기(2022).

□ Eyberg 문제행동 검사(K-ECBI: Eyberg Child Behavior Inventory)

- 한국 아이버그 아동행동검사⁸⁾는 아동의 행동문제 및 육아의 어려움을 평가하는 문제행동 검사지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판단하는 데도 사용하고 있음
 - Eyberg 아동행동검사는 아동행동 문제 및 육아의 어려움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아동문제행동의 강도, 양육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척도로 이루어져 있음

8) 원저자 sheila Eyberg 박사의 척도를 조용태 교수(중원대학교)가 한국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한 것임

- 저자는 부모·아동 상호작용 치료의 개발자이며 검사표는 부모와 아동의 상호작용 치료에서의 변화를 평가하고 외현화 행동문제가 있는 어린 아동들을 위한 부모훈련과 개입을 통해 변화를 평가하고자 하는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 유용함 (두정일 외 역, 2012)
- 부모와의 상호교류 평가척도로 주로 아동상담센터, 여성상담센터, 아동청소년과, 육아정보센터, 복지관 등에서 사용되고 있음
 - 이 척도의 평가자는 부모이며 2~16세 사이 아동의 문제행동을 7점 척도로 점수화함
 - 가정에서 발생하는 일탈행동의 빈도를 부모들이 측정하도록 설계된 것임
 - 아동과 청소년의品行장애 행동의 확인과 처치에 유용한 정보를 임상가와 연구자들에게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음
- 발달장애 아동의 문제행동을 측정할 만한 기준 또는 지표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많은 경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에서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측정할 때 활용함

〈표 II-10〉 Eyberg 문제행동 검사

아래에 행동을 설명하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먼저 그 행동이 현재 얼마나 자주 발생하는지를 해당하는 번호에 ○표하신 후, 현재 그 행동이 문제라고 생각하는지의 여부를 ‘예/아니오’에 ○표 하시오.

문 항	이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끔		때때로	자주		항상	(예 / 아니오)
1. 옷을 입을 때 꾸물거린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 식사시 꾸물거리거나 질질 시간을 끈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 식사에절이 좋지 못하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4. 차려준 음식을 먹지 않는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5. 요구한 일을 하지 않는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6. 잠자기 위한 준비가 느리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7. 정시에 잠자기를 거부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8. 스스로 집의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9. 별준다고 위협해야만 복종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0. 어떤 일을 지시했을 때 반항행동을 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1. 부모와 규칙때문에 논쟁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2.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를 낸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3. 심한 짜증(울화)을 낸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4. 어른에게 건방진 말을 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5. 징징거린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문 항	이 행동이 얼마나 자주 발생합니까?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가끔		때때 로	자주		항상	(예 / 아니오)
16. 잘 운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7. 소리지르거나 고함을 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8. 부모를 때린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19. 장난감과 물건을 부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0. 장난감과 물건에 조심성이 없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1. 훔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2. 거짓말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3. 다른 아동을 괴롭히거나 화나게 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4. 또래 아동과 말다툼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5. 형제 자매와 말다툼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6. 또래 아동과 몸싸움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7. 형제자매와 몸싸움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8. 계속해서 주의가 필요하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29. 말할 때 끼어든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0. 쉽게 주의가 산만해진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1. 주의의 지속시간이 짧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2. 과제를 끝마치지 못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3. 혼자서 잘 놀지 못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4. 한가지 일에 주의집중을 하지 못한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5. 과잉행동을 하거나 부산스럽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36. 잠자리에서 오줌 싸다.	1	2	3	4	5	6	7	(예 / 아니오)
문항 점수 합계								

□ 행동장애 강도 판정기준

- 일본에서는 판정기준의 20점 이상이면 시설 이용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장애인
챌린지 사업⁹⁾의 판정기준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음

9) 최종중장애인 낮활동 사업으로 도전적 행동을 가진 성인발달장애인에게 도전 행동 유형에 맞는 개인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함

〈표 II-11〉 행동장애 강도 판정기준표

평가일:

대상자:

평가자:

행동평가의 내용	행동장애 증상 제시	1점	3점	5점
1. 자신의 몸을 심하게 때리거나 상처를 입히는 등의 행위	속의 살이 보일정도가 되거나, 머리에 변형이 생길정도로 두들기거나 손톱으로 핏긋는 등	주1회 이상	1일 1회이상	하루 종일
2.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거나 발로 차는 행위	물거나 발로 차기, 머리잡아당기기, 머리박기 등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동 등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하루 빈번
3. 심한 집착	강하게 제지해도 옷을 벗어버리거나 외출거부, 몇백미터 떨어진 곳에 두고 온 것을 가지러가는 등의 행동을 계속 함	주1회 이상	1일 1회이상	하루 빈번
4. 과격한 기물파손	유리, 가구, 문, 창잔, 의자, 안경 등을 망가뜨리고 그 결과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큰 위험을 가져오거나, 옷을 어떡해도 찢어버리는 등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하루 빈번
5. 수면장애	밤낮이 바뀌어버려서 침대에 누워있지 못하고 사람이나 물건에 위해를 가하는 등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거의 매일
6. 먹으면 안되는 것을 입에 넣거나, 과식, 게워내기 등 식사에 관한 행동	테이블을 엮거나 식기 등을 던지기, 의자에 앉아있지 못하고 함께 식사하지 못함. 변이나 똥, 돌 등을 먹음. 몸에 이상을 가져올 정도의 식사거부/편식	주1회 이상	거의 매일	거의 매끼니
7. 배변활동과 관련된 강도의 장애	똥을 손으로 주무르거나 던지기, 벽에 문지르기, 강박적으로 배뇨배변행동을 반복하기 등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거의 매일
8. 과도하게 많은 움직임	신체 생명의 위험이 있을 정도로 뛰어 내리기, 보고 있지 않으면 잠시도 앉아 있지 않고 뛰어다님. 베란다 등 위험한 높은 곳까지 올라감	월1회 이상	주1회 이상	거의 매일
9. 일반적이지 않은 목소리를 높이거나 큰소리를 내는 등의 행동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를 지름. 한번 울기 시작하면 대성통곡을 몇 시간 계속함	거의 매일	하루 종일	멈추지 않음
10. 패닉상태가 되면 대처가 어려움	한 번 패닉 상태에 빠지면 체력적으로도 도저히 진정시킬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됨	-	-	곤란
11. 타인에게 공포감을 주는 태도의 과격한 폭력적 행위가 있고 그 대응이 어려움	일상생활에 사소하게 야단을 쳐도 폭발적인 행동을 보이고 관련자가 공포를 느낄 정도의 상황이 됨	-	-	곤란
총 합계(20점 이상)				

② 뇌병변장애인 기준

□ 뇌병변 장애의 판정개요¹⁰⁾

- 뇌병변 장애의 판정은 뇌성마비, 외상성 뇌손상, 뇌졸중과 기타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경우에 한함
 - 주된 증상인 마비의 정도 및 범위, 불수의 운동의 유무 등에 따른 팔·다리의 기능저하로 인한 식사, 목욕, 몸치장, 옷 입고 벗기, 배변, 배뇨, 화장실 이용, 의자/침대 이동, 거동, 계단 오르기 등의 보행과 일상생활동작의 수행능력을 기초로 전체 기능장애 정도를 판단함
 - 전체 기능장애 정도의 판정은 이학적검사 소견, 인지기능평가와 수정바델지수(Modified Barthel Index, MBI)를 사용하여 실시하며 진단서에 명기

〈표 II-12〉 수정바델지수 점수표

수행정도 평가항목	전혀 할 수 없음	많은 도움이 필요함	중간 정도 도움이 필요함	경미한 도움이 필요함	완전히 독립적으로 수행
개인위생	0	1	3	4	5
목욕	0	1	3	4	5
식사	0	2	5	8	10
용변	0	2	5	8	10
계단 오르내리기	0	2	5	8	10
착·탈의	0	2	5	8	10
대변조절	0	2	5	8	10
소변조절	0	2	5	8	10
이동	0	3	8	12	15
보행	0	3	8	12	15
휠체어이동	0	1	3	4	5

- 개인위생 : 세면, 머리빗기, 양치질, 면도 등
- 착·탈의 : 단추 잠그고 풀기, 벨트 착용, 구두 끈 매고 푸는 동작 포함
- 이동 : 침대에서 의자로, 의자에서 침대로 이동, 침대에서 앉는 동작 포함
- 휠체어이동 : 보행이 전혀 불가능한 경우에 평가

10)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참고

-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시각·청각 또는 언어상의 기능장애나 지적장애에 준한 지능 저하 등이 동반된 경우는 중복장애 합산 인정기준에 따라 판정함
- 현재는 장애등급 기준을 사용하지 않고 있으나 장애의 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내용을 참고할 수 있으며 수정바텔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표 II-13〉 뇌병변장애 등급기준

도움필요 정도	등급	장 애 정 도	수정바텔지수
타인의 전적인 도움필요	정 도 가 심 한 장 애 인	• 독립적인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양쪽 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으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팔과 한쪽다리의 마비로 일상생활 동작을 거의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함	• 32점 이하
타인의 도움필요		• 한쪽팔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이 불가능하며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양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33점~53점
부분적 도움필요		• 마비와 관절구축으로 한쪽 팔의 모든 손가락 사용이 불가능하여 이를 이용한 일상생활 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한쪽 다리의 마비로 이를 이용한 보행이 불가능하여 보행에 대부분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워 부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54점~69점
간헐적 도움필요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은 자신이 행하나 간헐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함	• 70점~80점
도움없이 수행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이 수행하나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는 때가 있음	• 81점~89점
비정상적 양상		• 보행과 대부분의 일상생활 동작을 자신이 완벽하게 수행한 간혹 수행 시간이 느리거나 양상이 비정상적인 때가 있음	• 90점~95점

자료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장애정도판정기준

③ 장애인 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 조사표 내용

- 보건복지부는 2019년 장애인 등급제를 대체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¹¹⁾를 고시하고 이에 따라 장애인의 기능제한, 사회활동 및 가구환경 등을 조사하고 있음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일반사항과 서비스 필요도 평가를 위한 기본조사 영역으로 구분됨
 - 일상생활지원 분야와 이동지원 분야로 대별되며 이를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누어 조사함
 - 조사영역은 IADL, ADL을 체크를 기반으로 작성하도록 되었음

〈표 II-14〉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내용 및 점수 산정방법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동작(ADL)	①	②	③	④	
기능제한 (X1)	1. 옷 갈아입기	0점	4점	8점	24점	13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2. 목욕하기	0점	3점	6점	18점	
	3. 구강청결	0점	2점	4점	12점	
	4. 음식물넘기기	0점	2점	4점	12점	
	5. 식사하기	0점	4점	8점	24점	
	6.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	0점	2점	4점	12점	
	7. 옮겨 앉기	0점	5점	10점	30점	
	8. 시청각 복합평가	0점	6점	12점	36점	
	9. 앉은 자세 유지	0점	3점	6점	18점	
	10. 실내이동	0점	4점	8점	24점	
	11. 실외이동	0점	8점	16점	48점	
	12. 배변	0점	6점	12점	36점	
	13. 배뇨	0점	4점	8점	24점	
	계	318점				
	수단적 일상행할 동작(IADL)	①	②	③	④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전화사용	0점	2점	4점	12점	
	2. 물건사기	0점	2점	4점	12점	

11) 보건복지부고시 제2019-119호, 2019. 6. 24제정

조사영역	조사항목	문항별 점수				산정방법
	일상생활동작(ADL)	①	②	③	④	
	3. 식사준비	0점	4점	8점	24점	
	4. 청소	0점	2점	4점	12점	
	5. 빨래하기	0점	2점	4점	12점	
	6. 금전관리	0점	2점	4점	12점	
	7. 대중교통이용	0점	4점	8점	24점	
	계	120점				
	인지행동특성	①	②	③	8개 항목의 문항별 점수를 합산한다.	
	1. 주의력	0점	10점	20점		
	2. 위험인식 및 대처	0점	9점	18점		
	3. 환각·망상	0점	2점	4점		
	4. 조울상태	0점	2점	4점		
	5. 문제행동	0점	4점	8점		
	6. 공격행동	0점	4점	8점		
	7. 자해행동	0점	4점	8점		
	8. 집단생활 부적응	0점	12점	24점		
	계	120점				
사회활동 (X2)	사회활동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24점만 인정한다.
	1. 직장생활	0점		24점		
	2. 학교생활	0점		12점		
가구환경 (X3)	인지행동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36점만 인정한다.
	1. 독거가구	0점		36점		
	2. 취약가구	0점		36점		
	3. 본인을 제외한 가족의 사회생활	0점		12점		
	주거특성	①		②		항목간 합산되지 않고 최대 4점만 인정한다.
	1. 이동에 제한이 있고, 지하층 또는 2층이상 거주	0점		2점		
	2. 이동에 제한이 있고, 엘리베이터 없는 지하층 또는 2층 이상 거주	0점		4점		

- 발달장애인의 일상생활 동작 및 수단적 일상생활동작 수준을 평가
-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를 기반으로 한 기본조사지 일부
- 아동용 (만 19세 미만) 조사표는 가구환경 중 한부모 및 조손가족 등의 내용 정도가 다름

□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의견

- 실제 전담반을 운영하는 시설 관련자들의 경험과 결정에 의해 기존 이용자들 중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가 결정되고 있음
 - 담당자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하고 분석하여 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 시설현장이 함께 참여한 자문회의를 진행하고 전담반에 대한 의견수렴하였음
 - 참석대상 : 전담반 운영 담당자 또는 시설장
 - 자문회의 회차 및 내용
 - 2회에 걸쳐 자문회의를 추진하였으며 전담반으로 지정된 시기를 달리하여 경험공유
 - 의견수렴 내용
 - 전담반 운영 현황과 개선방향

○ 중증장애인(최중증 장애인)의 정의와 전담반 필요성

- 중증장애인의 경우 타 시설에서 이용자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기자가 많음

“대부분 복지관의 경우 도전적행동에 타해가 있는 경우 대부분 다 받지 않음. 타해가 있는 경우 인권문제가 있으며 법정 소송에 있는 기관들이 많음. 흔히 경기도에서 분류해 놓은 최중증에 해당되는 분들은 일반 시설에서는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게 현실적인 부분”

○ 이용자가 전담반으로 입소하기 위한 기준의 모호성

- 대부분 기관 자체적으로 입소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기준들이 시설 이용장애인의 장애 유형에 따라 다르며, 내부에서도 의견이 다름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따르고 있음. 첫 번째로는 정신과 약과 행동조절 약을 먹는 사람, 두 번째 타 기관에서 입소를 거부하셨던 경험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관찰일지 상 도전적 행동이 심해서 일대일 밀착케어가 필요한 사람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현재 우리 기관에서는 4명을 케어하고 있음 ”

“작년에 전담반 이용인 한 명이 퇴소를 하면서 충원을 해야 하는데 입소가 필요해 보였지만 세 가지 기준에 해당되지 못한 경우가 있었음. 따라서 시설에서 거부를 당하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아도 전담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도전적 행동에 대한 명확한 정의도 필요함. 시설마다 도전적 행동의 기준이 애매모호해서 타 기관에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입소 거부된 이용인이 우리 기관에서는 아닌 경우도 있음. 타 해, 파손, 폭력적인 행동 등 한 가지 조건 안에서도 봐야 할 게 많은데 단지 도전적 행동을 월 몇회 했다는 것으로 기준을 삼는 것은 범주가 너무 크다고 생각함”

“우리기관의 경우 활동지원점수로 선정했고 처음에는 팀원 논의를 통해서 대상자를 정하였음. 보호자 분들께 동주민센터에서 사회보장급여통지서를 받아서 증빙할 수 있도록 했었음. 하지만 명확한 매뉴얼이나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어서 21년 5월부터 전담반 운영이 시작되면서 몇 개월정도 시행착오들이 있었음”

“평가자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있을 것임. 광주의 최종증 융합돌봄 시범사업의 경우, 평가자마다 주관적인 부분이 클 수 있어서 선정기준이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하는 경우가 있음. 주관적 판단을 배제시키려면 평가항목(정신과 약과 행동조절 약을 먹는 사람, 타 기관에서 입소를 거부하였던 경험이 있는 사람, 관찰일지 상 도전적 행동이 심해서 일대일 밀착케어)들을 좀 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음”

“입소기준 마련 시, 양적 평가와 질적 평가가 모두 담겨져야 할 것임. 정성평가 중에서도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지만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심리적인 것들을 담을 수 있으면 좋겠음. 즉, 워커의 판단 또한 반영되면 좋겠음”

“중증 장애라고 말할 수 있는 기준이 없고 활동보조평가를 위한 기준이 있으나 뇌병변에 치우쳐 있음. 아무리 도전적 행동이 강하게 나와도 이 기준표를 삼으면 점수가 나오지 않음. 뇌병변 장애도 중증으로 포함시켜서 뇌병변 장애의 케어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뇌병변과 중증장애기준이 두 개로 나뉘어져야한다고 생각함”

○ 기타 전담반 운영에서의 어려움

“사회재활교사들은 골절, 꼬집힘 등으로 다치는 경우가 많아서 교사와 같은 위험수당 필요함”

“장애인중증전담반 교사의 경우 정규직인 경우도 있지만 중증전담반으로 입사한 분의 경우, 예산이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기간제이거나 호봉 인정을 받지 못해 이직률이 높은 편임. 경력있는 교사의 케어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업비를 통합적으로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함”

“입소기준의 마련도 중요하지만 시설의 공간지원도 굉장히 중요함. 시설 기준이 1명당 9.9㎡의 기준이 있으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대부분임. 이용인 뿐만아니라 직원, 사회복지무원, 자원봉사자, 강사들을 포함하면 이용인이 사용할 견적이 줄어들음. 근접할수록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물리적 환경의 개선도 필요함”

“우리 기관은 설립된 지 20년이 넘었으므로 이미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인들이 많이 입소하고 있음. 공간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함. 도전적 행동이 심한 이용인의 경우 혼자 한 공간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다른 이용인들이 배회를 하는 실정임. 같은 이용료를 내지만 혼자 공간의 혜택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음”

3. 타 시도 사례

□ 서울시(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¹²⁾

-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성인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받고 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¹³⁾에게 낮시간대 맞춤형 소집단 서비스 제공
 - 긍정적인 행동변화로 지역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가족의 돌봄부담을 경감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모집 인원은 총 23명(2023년 현재)으로 서울시 거주 중인 만 19세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함
 - 최종 이용자는 서울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전문가 사례회의를 진행하다가 선발된 이용자는 앞선 이용자의 서비스 종료시점에 따라 지원받게 됨
 - 서비스 대상 기준에 맞춰 신청자격을 공지하고 신청기간 및 방법을 홍보하여 대상자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접수 및 의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함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장애인등록자 중 (최근 서울 거주 6개월 이상) 도전적 행동을 하는 성인기 최중증 발달장애인으로,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해 현재 재가에서만 생활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 현재 시설에 입소하거나 이용 중이 발달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

12) 웰페어뉴스(2023. 4. 3)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서울시·전북대학교(2019),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 사업 운영매뉴얼 참고

13) 최중증발달장애인의 정의는 합의된 내용이나 정의가 있지 않으며 선정 자격으로 대상결정함

- 낮활동 지원사업은 주4일(월화목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장 5년 동안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최장 5년 동안 서비스를 제공받게 되며 이용료는 개별적으로 부담함
- 이용자는 복지관별로 자기중심 프로그램, 사회참여 활동 등 도전적 행동을 감소 또는 완화시키는 프로그램 제공받음
- 보호자에게는 이용자가 가정에 복귀한 후에도 도전적 행동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처요령 교육을 실시함

○ 매뉴얼에는 낮활동서비스의 이용자 선정을 위한 기준을 적격기준과 부적격 기준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음

- 적격기준에는 시급성을 판단할 수 있는 예시를 두고 있으며 다층적 평가를 통해 주로 도전적 행동의 정도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

〈표 II-15〉 서울시 낮활동서비스 이용자 선정 기준

구 분	서 식
적격 기준	① 다층적 평가를 통해 도전적 행동이 유의미하다고 판정된 발달장애인 ② 장애 특성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하여 기존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서비스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발달장애인 ③ 장애인으로 구성된 가족, 또는 각종 질병, 노령으로 인하여 긴급한 서비스 연계가 필요한 발달장애인
부적격 기준	① 현재 정기적인 서비스를 이용 중인 발달장애인 ② 도전적 행동이 전혀 없는 경도 수준으로 판정된 발달장애인 ③ 주간보호센터, 직업재활시설 등 타 서비스 제공기관 연계를 통해 더욱 발전이 기대되는 발달장애인 ④ 미등록 발달장애인

출처 : 서울시·전북대학교(2019).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 운영매뉴얼 : 운영지침

○ 도전적 행동에 대한 종합사정평가표

- 다양한 경로를 통해 도전적 행동의 정도를 파악하고 있음. 특히, 직접관찰과 부모의 의견을 청취하고 담당자가 종합의견을 작성하고 낮활동 사업 참여 대상으로서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면담과 도구를 활용한 사정 점수도 중요하지만 담당자의 직접관찰과 종합의견을 중요한 요소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사회재활교사 등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함

〈표 II-16〉 낮활동사업 참여대상 선정기준 예시

번 호	낮활동 17-***	성 명	000									
기능평가 면담지 (가족면담 내용)	- 도전적 행동으로 물건 던지기, 침 뱉거나 묻히기(자해) 꼬집기, 때리기가 있음 - 자해정도는 빨개질 정도로 나타남											
도전적 행동 동기사정 결과	<table><tr><th>감각추구</th><th>회피</th><th>관심얻기</th><th>획득</th></tr><tr><td>16점</td><td>18점</td><td>14점</td><td>18점</td></tr></table>				감각추구	회피	관심얻기	획득	16점	18점	14점	18점
	감각추구	회피	관심얻기	획득								
16점	18점	14점	18점									
	- MAS 결과 획득과 회피를 위한 도전적행동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차 순위로 감각추구, 관심 얻기 등으로 나타남. 평가척도에 비해 부모가 생각하는 도전적 행동의 기준을 보다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여짐											
Eyberg 행동검사결과	<table><tr><th>점수</th><th>도전적 행동 개수</th></tr><tr><td>111점</td><td>15개</td></tr></table>				점수	도전적 행동 개수	111점	15개				
	점수	도전적 행동 개수										
111점	15개											
	- Eyberg 행동검사 결과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당사자가 언어적 의사표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에 관해 어머니가 낮게 평가했다는 점, 평가체크를 하는 부모가 생각하는 기준이 현재 보이는 행동들에 비해 비교적 낮게 평가하였음											
직접관찰	000 - 상동행동 관찰됨 - 일회용 종이접시를 다 찢어 던진 후 잘게 찢는 행동 지속적으로 함(감각놀이) - 이하 구체적인 관찰 결과 기록 20여 가지 나열											
종합의견	000 - 당사자는 도전적 행동으로 현재 타 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상태로 보이며, 당사자가 가정에서만 지내며 스트레스 해소와 낮활동 서비스 기관이 필요해 보임 - 상담 시 관찰결과 당사자의 감각추구 행동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해, 물건던지기 등 도전적 행동이 높은 것으로 관찰되어, 낮활동서비스 이용 1순위에 적격하다고 사료됨											

출처 : 서울시·전북대학교(2019).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 운영매뉴얼 : 운영지침

□ 부산시(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 바로가기 홈페이지)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활용

-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 바로가기 시스템에 장애유형과 욕구에 맞는 장애인주간보호센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평가도구를 탑재하고 있음
 - 학령기 이후 성인 장애인 중 주간보호시설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지역별, 장애유형별, 이용금액별, 운영주체별 시설을 직접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중증장애인선별검사는 홈페이지상에서 가족 또는 보호자가 지역 내 주간보호시설을 선택할 때 활용되고 있음
 - 동시에 지역 내 주간보호시설의 위치, 장애인 대기 현황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 장애유형 및 장애인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센터를 찾는데 용이하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용자 조건 : 지자체 등록장애인으로 의사능력 부족, 중증 거동장애 등으로 인해 보호자 없이 혼자 지내기 어려운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기초생활보장대상수급자 우선 배려

- 평가도구는 부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발한 「ICF 기반 중증장애인 선별검사」를 통해 지원 요구정도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중증발달장애인의 중증 정도를 평가하여 ‘전반적 지원’, ‘확장적 지원’, ‘제한적 지원’ 으로 구분하여 지원제공함

〈표 II-17〉 부산시 중증발달장애인 진단 검사표

구분		수행도 ¹⁴⁾					일일 지원시간 ¹⁵⁾					지원유형 ¹⁶⁾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자기관리	신체의 일부 씻기															
	전신 씻기															
	수건으로 몸 닦기															
	양치질하기, 손·발톱 깎기															
	빋질이나 면도하기 (남)/ 생리대 관리하기 (여)															
	화장품 사용하기															
	날씨를 고려하여 적합한 옷차림 선택															
	안전한 음식과 위험한 음식 구별하기															
	적절한 양으로 먹기															
	규칙적인 생활하기															
의사소통	간단한 지시에 따르기															
	두 가지 연속된 지시를 듣고 따르기															
	얼굴 표정, 손의 움직임이나 신호, 제스처와 같은 몸짓으로 전달되는 의미 이해하기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황 이해하기															
	단어 수준에서 의미 이해하기															
	문장 수준에서 의미 이해하기															
	얼굴표정, 팔과 손의 움직임 및 자세 등과 같은 몸짓을 이용하여 의미 전달하기															
	단어 수준으로 상황이나 느낌 표현하기															
	문장 수준으로 상황이나 느낌 표현하기															
	대화 시작하고 끝맺기															

구분		수행도 ¹⁴⁾					일일 지원시간 ¹⁵⁾					지원유형 ¹⁶⁾				
		1	2	3	4	5	1	2	3	4	5	1	2	3	4	5
의사소통	상대방의 질문에 간단히 답하기															
	필요할 경우, 간단한 질문하기															
	위급한 상황에서 도움 요청하기															
	전화기 사용하여 대화하기															
	자신의 언어 특성에 적합한 보안·대체 의사소통 장치 사용하기															
대인 상호작용과 대인관계	다른 사람들과 친교적 인사 나누기															
	고마움, 미안한 마음 표현하기															
	적절한 표현으로 요구하거나 부탁하기															
	다른 사람의 요구나 부탁 들어주기															
	싫은 것을 표현하거나 거부하기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은 하지 않기															
	친숙한 사람과 이야기 주고받기															
	옳지 않은 일 하지 않기															
	화내지 않고 상대방의 의견듣기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하기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절지키기															
	공동 관심사를 가진 친구와 관계 맺고 유지하기															
문제 행동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행동															
	다른 사람에게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															
	공공장소에서나 타인에게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성적인 행동															
	다른 사람의 활동을 방해하는 행동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동															
	사회적으로 비협조적인 행동															
	특이한 행동 반복하기															
	다른 사람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보임															
	정신병적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학적인 행동															

출처 :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www.bsrehab.or.kr)

중증발달장애인 진단검사-지원프로파일, 중증발달장애인 진단검사-최중증용 참고하여 재구성

□ 타 유형의 돌봄서비스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관의 장애인 돌봄서비스를 비교하면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전담반과 사업과 다른 점이 있으며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역할과 기능 및 전담반 운영에 향후 개선방향에 참고할 수 있음
 - 광주시는 1:1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선정에 있어 특이점은 적격심의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선정한다는 것임

〈표 II-18〉 장애인복지관의 중증장애인 돌봄서비스 비교

구분	광주 최중증 융합돌봄 시범사업	서울 최중증 낮활동 지원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 서비스
대상	• 광주시 거주 최중증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	• 주간활동서비스 이용 중 최중증 이용자
선정 기준	• 도전적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 대상자는 광주시 적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선정	• 도전적 행동 등으로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이용 거부를 당한 발달장애인 • 이용자 상담·평가를 거쳐 선정	• 주간활동 이용자 선정 조사 결과 ①도전적 행동이 있거나 ②중복장애 또는 ③혼자서는 신변처리가 곤란한 대상자
제공 서비스	• 1:1 24시간 돌봄 지원 • 주간활동, 공동생활 지원주택, 단기체험 및 긴급돌봄 제공	• 1:1 낮시간 돌봄 지원 • 개별화된 개입과 이용자 특성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프로그램 제공	• 낮시간 그룹 활동 참여 지원 • 2~3인 그룹과 연계하여 그룹형 주간활동서비스 이용할 수 있도록 전담제공인력 배치
지원 방식	• 예산 + 바우처(주간활동) • 공동생활 지원주택, 1:1 돌봄인력 인건비 등 지원	• 시설 기능보강, 인건비, 전문가 양성교육 등 지원	• 바우처(주간활동) • 바우처 단가(15,570원)에 가산수당(7,780원)추가지급
제공 시간	• 일 24시간(주중, 주말) • 월 720시간(176시간)	• 일 6시간 (월,화,목,금 10~16시) • 월 96시간	• 일 최대 8시간(주중) • 월 최대 176시간(확장형 기준)

14) 1. 스스로 수행가능 2. 경도 도움필요 3. 중증도 도움필요 4. 중도 도움 필요 5. 항상 도움필요

15) 1. 0%~20% 2. 21%~40% 3. 41%~60% 4. 61%~80% 5. 81%~100%

문제행동 영역의 문제행동 중단을 위한 일일 지원시간

1. 전혀없음 2. 하루에 1시간 이하 3. 일주일에 1~5시간 4. 하루에 1~2시간 5. 하루에 2시간 이상

16) 1. 없음 2. 점검 3. 언어/몸짓 지원 4. 부분 신체 지원 5. 전체 신체 지원

문제행동 영역의 지원유형

1. 전혀 없음 2. 점검하는 정도의 지원으로 문제행동의 발생 예방 가능 3. 언어/몸짓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중단 가능 4. 부분 신체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중단 가능 5. 전체 신체 지원을 통한 문제행동 중단 가능

구분	광주 최종증 융합돌봄 시범사업	서울 최종증 낮활동 지원	주간활동 1인 집중지원 서비스
소요 예산	• 연간 총 40억원	• 연간 총 30억원	• 연간 총 82억원
이용자 수	• 20명(23년) • 개소당 10명	• 80명 (23년 목표) • 개소당 4명	• 2,000명 (23년 목표)
제공 기관수	• 2개소 (북구, 서구)	• 18개소	• 492개소
본인 부담금	• 월 25만원	• 월 20만원	• 없음

*출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4. 시사점

- 현재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주간보호 전담반에서는 시설별로 모두 다른 지표를 기준으로 삼아 이용자를 선정하고 있음
 - 전담반을 운영하는 20개소 주간보호센터마다 다른 8가지 이상의 다른 종류 판단기준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음
 - 여기에는 중복되는 내용이 있으며 장애유형을 함께 고려하기에는 성격이 매우 다른 형태를 참고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II-19〉 현재 사용 중인 입소기준과 내용

평가기준명	내 용
경기도 전담반 이용자 선정기준예시	-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표를 이용 400점 이상, 타 시설 거부경험, 약물복용 여부,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어려움 증명
행동장애 강도 판정기준표	- 행동장애의 강도를 설명하고 간격을 숫자화 할 수 있도록 한 기준표 - 행동장애 증상을 제시하고 있으나 발달장애인의 문제행동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임
수정바델지수 점수표	- 뇌병변장애인을 판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 개인의 신체활동 가능 정도를 수치화 하였음
보건복지부 장애등급기준	- 뇌병변장애인의 장애등급을 판정할 때 사용되는 지표로서 타인의 도움필요 정도와 수정바델지수 점수를 고려하여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함
장애인서비스지원종합조사표	- 장애인의 기능제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을 점수화하고 성인용과 아동용으로 나누어 서비스 지원 범위를 결정할 때 활용하는 지표

평가기준명		내 용
Eyberg 척도		- 아동의 문제행동 빈도를 점수화하여 발달장애인의 도전적 행동을 판단하는데 활용하기도 함
기타	도전적행동 기록지 일상생활능력평가 동기사정척도	- 각 시설별로 담당자의 재량으로 다른 도구를 사용하여 판단기준으로서 활용하고 있음

- 시설마다 장애유형과 환경이 다르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일정부분 공통적인 영역에 대한 객관적 판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발달장애인이 약 81%, 뇌병변장애인인 12%에 달하는 주간보호센터 이용자 중 전담반에 입소할 수 있는 “최중증” 장애인을 판단하는데 활용하도록 합의된 기준이 필요함
- 타 시도의 경우도 개별적으로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진 기준을 사용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발달장애인을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이용자를 대상으로 도전적 행동의 정도 파악과 직접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적격성을 판단하고 있음
 - 부산시의 경우는 통합정보시스템에 활용되는 진단검사표를 개발하여 사용 중이며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중증발달장애인 진단검사를 지원프로파일과 최중증 장애인 진단용으로 구분하여 활용하고 있음
- 어떤 지표가 더 정확하다고 할 것 없이 다른 성격을 통합하고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은 중증의 의미가 다르므로 이를 구분하여 전담반 인원으로 입소시킬 수 있는 판단도구가 필요함
 - 직접 돌봄을 수행할 사회재활교사 혹은 초기면담이나 최초사정을 담당하는 종사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영역이 있어야 함
 - 장애인 유형에 따른 판단이 가능해야 할 것이며 경기도가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방향성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영도 있어야 함

Ⅲ 경기도 중증장애인전담반 입소기준

1.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기준

1) 입소기준의 지향점과 구성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의 지향점

- 이용 장애인의 장애 유형과 각 시설별로 미션과 비전을 다르게 설정하고 있으나 애초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설치·운영의 목표에 따른 공통적 목표를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목적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데 지원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낮 시간동안 활동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 하는데 있음
 - 경기도에서 정한 사업의 목적은 “장애인을 주간에 일시보호하며 필요한 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임
 - 또한 전담반 운영의 목적은 “중증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이용을 위한 추가지원을 통해 돌봄 부담 경감과 삶의 질 향상” 과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이용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한 환경에서 주간보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및 장비지원” 함
 - 전담반의 최종목적은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정도가 더 심한 장애인을 안전한 곳에서 보호하고 가족에게 쉼을 주는 것임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기준의 특징

-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이용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을 도출하는 것을 우선 목표로 하여 유사사업의 선정기준을 검토하였음

- 이용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돌봄서비스 대상자 중 더 많은 돌봄을 필요로 하는 “최중증” 이용자는 다른 이용자들과 분리와 밀착 돌봄을 필요로 하므로 그 조건에 부합하는지 판단이 전제되어야 함
 - 프로그램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해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일은 입소 이후 개인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구체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임
 - ADL, IADL, ICF 기반의 각각 점수표와 장애인등급 기준 등 장애인의 중증정도를 판정하는 기준들을 검토하고 공통영역과 개별영역을 구분하였음
 - 경기도 내 시설별로 또 타 시도에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기준을 바탕으로 최근 들어 중증장애인을 위한 돌봄강화를 위해 장애 정도 판단을 구체화하고자 사용된 도구들을 활용하고자 하였음
 - 영역과 내용구성은 현재 전담반을 운영하는 현장 전문가들을 통해 검토받았으며 수정이 가능한 영역은 최대한 현실을 반영하고자 하였음
- 발달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 선정을 위한 기준을 다르게 구성하였음
- 중증장애인 시설인 만큼 장애의 정도를 선명하게 구분하기 어렵고 중복장애가 있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뇌전증, 정신과 약물복용 등 공통적인 증상들까지 고려할 수 없음
 - 다만, 일상생활 지원에서 의미 있는 여가활동, 지역사회적응활동, 교육·훈련까지 다양한 사업수행을 목표로 하는 주간보호시설에서 “최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집중해야 할 프로그램 구성 등 대상의 대별은 필요해 보임
 - 따라서 장애유형을 구분하여 중증의 정도가 더 심한 장애인을 구별하여 전담반 입소 기준으로 제시하고자 하였음
- 공통영역과 개별 영역은 최소점수에서 최대점수의 차이를 두고 점수 차이 자체로 정도의 차이를 두고자 하였음
- 일반이용자와의 구분하기 위해 일상생활, 식생활, 의사소통, 문제행동 영역에서 기본적인 단위부터 지원이 더 많이 필요한 정도까지의 수행능력을 보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음
 - 현재 운영 중인 전담반 내 장애인들의 현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향후 입소를 염두에 둔 장애인을 판단하기 위한 내용 구성을 염두에 두었음
 - 다만, 구체적인 항목 내용은 현실에 맞도록 수정·보완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임
- 담당 인력의 직접관찰 의견을 함께 작성하여 종합적인 판단이 가능하도록 함
- 수치적 판단과 함께 시설 내에서 이용자를 관찰하거나 돌봄 경험을 한 사회재활교사의 직접관찰 소견을 작성하여, 점수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까지 검토가 완료된 후 입소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2) 전담반 입소기준

□ 발달장애인

〈표 Ⅲ-1〉 일상생활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샤워를 포함한 스스로 신체 씻기가 가능하다. - 샤워기를 틀고 비누를 사용하여 손, 발, 몸을 씻는 등						
2	수건을 사용하여 몸을 닦을 수 있다. - 전신이나 신체 일부를 씻은 후 수건으로 닦기 가능						
3	화장품 사용하기가 가능하다. - 적당량의 화장품을 손에 덜어서 필요 부위에 바르기 등						
4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 언어, 제스처, AAC						
5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으며, 뒤처리가 가능하다. - 옷 벗고 입기, 물 내리기, 손 씻기 등						
6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있으며, 뒤처리가 가능하다. - 휴지를 사용하여 닦기, 옷 입기, 물 내리기, 손 씻기 등						
7	스스로 양치질 등 구강건강 행동을 할 수 있다. - 치약사용, 칫솔질, 물 뱉기, 입 주변 정리, 가글 등						
8	머리 빗질하기/면도하기/여성용품 관리 등 일상생활 행위를 할 수 있다. - 빗을 사용하여 머리 빗기, 면도하기, 생리대 교체 등						
9	스스로 옷 입고 벗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 단추 풀고 채우기, 손을 소매에 넣기, 머리 위로 씌워입기 등						
10	겉옷 및 속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다. - 겉옷을 입고 벗기, 속옷을 입은 채 유지하기 등						
11	자기 물건을 챙길 수 있다. - 개인적인 물건을 챙기고 정리하는 등						
12	익숙한 거리나 도로 등을 혼자서 갈 수 있다. - 센터에서 공원 등						
13	익숙한 거리나 도로를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다. - 단체 이동						
14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다. - 택시, 버스, 자전거 등						
15	스스로 교통비를 지불할 수 있다. - 택시카드, 버스카드						
16	적절한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목적지까지 찾아 갈 수 있다. - 센터에서 집, 집에서 센터						
계							
1 : 수행가능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음) 2 : 경도 도움 필요(요청에 따라 약간의 도움) 3 : 중등도 도움 필요(경우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대체로 도움을 받아야 수행가능) 5 : 항상 도움 필요(모든 경우에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함)							
담당인력	-일상생활 영역의 점수가 낮고						- /50
직접관찰소견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총점 :							

〈표 Ⅲ-2〉 식생활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 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을 수 있다. - 식사 전 필요한 준비 등						
2	스스로 차례를 기다릴 수 있다. - 줄을 서거나, 식사 장소로 이동하는 등						
3	스스로 배식을 받을 수 있다. - 식기를 들고 흘리지 않고 원하는 적절한 양의 음식을 담을 수 있는 등						
4	바른 태도로 식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 의자에 바르게 앉기, 식사 장소에서 움직이지 않고 식사 마치기 등 - 식사에 집중하기, 편식하지 않기, 식사 속도를 유지하기 등						
5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 가능						
6	병이나 캔을 열거나 조미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원하는 것을 돌려서 열거나 따고 도구를 제자리에 두는 등						
7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마실 수 있다. - 흘리지 않고 물 또는 음료를 원하는 만큼 마시기 등						
8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할 수 있다. - 주어진 메뉴를 먹는 등						
9	추가 배식을 원할 경우 욕구를 표현하여 배식을 받을 수 있다. - 원하는 양을 적절한 양으로 먹기, 배부르면 식사 마치기 등						
10	식사 후 자리, 식사 도구 등을 정리할 수 있다. - 식판과 컵 등을 제자리에 두기						
계							50
1 : 수행가능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음) 2 : 경도 도움 필요(요청에 따라 약간의 도움) 3 : 중등도 도움 필요(경우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대체로 도움을 받아야 수행가능) 5 : 항상 도움 필요(모든 경우에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함)							
담당인력 직접관찰조건	-식생활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50
총점 :							

〈표 Ⅲ-3〉 의사소통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여 적절하게 수행						
2	다른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가 가능하다. -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와 제스처, AAC로 인사 나누기 등						
3	적절한 표현으로 요구나 부탁할 수 있다. - 상황과 목적, 예의에 맞게 요구 또는 부탁함						
4	두 가지 연속된 안내를 듣고 따르기가 가능하다. -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기 등 두 가지 연속행동 등						
5	표정, 손의 움직임이나 신호, 제스처와 같은 몸짓으로 전달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6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되는 그림이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함						
7	문장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되는 문장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함						
8	얼굴표정, 팔과 손의 움직임 및 자세 등과 같은 몸짓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할 수 있다.						
9	단어 수준으로 상황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10	문장 형태로 상황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11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다. - 대화 내용에 대한 표현을 함 (수용, 동의 반대 등)						
12	상대방의 질문에 간단히 답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질문에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짧은 대답 가능						
13	필요할 경우,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궁금한 내용에 대해 의문사 질문을 함						
14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위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등						
15	전화기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 전화기를 다룰 수 있으며 적절한 표현이 가능						
16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AAC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 감정, 상황을 표현함						
17	싫은 것을 표현하거나 거부하기를 할 수 있다. - 구어적으로 싫은 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임						
18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연장자와 아동을 구별하고 존대어를 쓰거나 보호 행동 가능						
19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절을 지킬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거나 주의를 기울임						
20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좋아하는 활동을 동료와 함께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함						
계							
1 : 수행가능, 2 : 경도 도움 필요, 3 : 중등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 5 : 항상 도움 필요							
담당인력 직접관찰소견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100
총점 :							

〈표 Ⅲ-4〉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 항	항목	발생빈도					점 수	강도					점 수
		5	4	3	2	1		1	2	3	4	5	
1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한다. - 자신을 때리기, 머리 부딪히기, 물기, 꼬집기 등												
2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행동을 한다. - 타인을 물거나 발로 차거나, 때리기 등 상처 입힐 수 있는 행동												
3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 고함지르기, 침 뱉기, 욕하기, 따라다니기, 갑자기 만지기 등												
4	심한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 옷을 벗어버리거나, 특정 물건 또는 사람에게 집착하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넣기, 특이한 행동을 반복하기 등												
5	과격한 행동으로 기물을 파손한다. - 물건을 고의적으로 파괴하는 행동으로 본인이나 주변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6	배변과 관련된 장애행동을 한다. - 강박적으로 배뇨배변행동을 반복하기, 변을 만지기 등												
7	과도하게 많은 움직임 또는 사회적으로 부적절한 행동을 한다. -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며 위험할 수 있는 장소에 올라가서나 뛰어들기, 제자리 뛰기, 제자리 돌기 등												
8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우는 행위를 한다. -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를 내거나, 반복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통곡함												
9	정신질환 증상과 같은 정신건강학적인 행동을 한다. - 지나치게 들뜸, 폭력적 행위가 있고 대응하기 어려움												
10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 질서를 지키지 않으며 돌발행동에 대해 저지되지 않음												
계							50						50
발생빈도 1 : 전혀 없음 2 : 한달에 1~10회 3 : 일주일에 1~10회 4 : 하루에 1~10회 5 : 매 시간 1~5회 강도 : 1 : 타인과 한 공간에 지낼 수 있을 정도 (인지할 만한 문제 없음, 중재 또는 지원 필요 없음) 2 : 대체로 양호하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 (경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행동) 3 : 문제행동의 발생 빈도가 높지 않으나 위험성이 있는 명백한 문제행동 4 : 발생 빈도가 높으며 위험성도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제한적인 정도 5 :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이 극도로 제한적이며 절대 공간 분리가 필요한 정도													
담당인력 직접관찰 소견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 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100
총점 :													

□ 뇌병변장애인

〈표 Ⅲ-5〉 일상생활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 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샤워를 포함한 스스로 신체 씻기가 가능하다. - 샤워기를 틀고 비누를 사용하여 손, 발, 몸을 씻는 등						
2	수건을 사용하여 몸을 닦을 수 있다. - 전신이나 신체 일부를 씻은 후 수건으로 닦기 가능						
3	화장품 사용하기가 가능하다. - 적당량의 화장품을 손에 덜어서 필요 부위에 바르기 등						
4	화장실을 가고 싶을 때 의사표현이 가능하다. - 언어, 제스처, AAC						
5	스스로 소변을 볼 수 있으며, 뒤처리가 가능하다. - 옷 벗고 입기, 물 내리기, 손 씻기 등						
6	스스로 대변을 볼 수 있으며, 뒤처리가 가능하다. - 휴지를 사용하여 닦기, 옷 입기, 물 내리기, 손 씻기 등						
7	누운 상태에서 자세 바꾸기가 가능하다. - 자세가 불편한 경우 스스로 자세를 바꿀 수 있음						
8	의자 또는 휠체어로 스스로 옮겨 앉을 수 있다. - 프로그램 수행 중 경우 본인이 필요하다면 옮겨 앉기 가능						
9	보조 기구를 사용하여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다. - 휠체어, 목발 등을 사용하여 이동이 가능함						
10	스스로 양치질 등 구강건강 행동을 할 수 있다. - 치약사용, 칫솔질, 물 뱉기, 입 주변 정리, 가글 등						
11	머리 빗질하기/면도하기/여성용품 관리 등 일상생활 행위를 할 수 있다. - 빗을 사용하여 머리 빗기, 면도하기, 생리대 교체 등						
12	스스로 옷 입고 벗는 것이 모두 가능하다. - 단추 풀고 채우기, 손을 소매에 넣기, 머리 위로 씌워입기 등						
13	겉옷 및 속옷을 단정하게 입을 수 있다. - 겉옷을 입고 벗기, 속옷을 입은 채 유지하기 등						
14	자기 물건을 챙길 수 있다. - 개인적인 물건을 챙기고 정리하는 등						
계							
1 : 수행가능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음) 2 : 경도 도움 필요(요청에 따라 약간의 도움) 3 : 중등도 도움 필요(경우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대체로 도움을 받아야 수행가능) 5 : 항상 도움 필요(모든 경우에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함)							
담당인력 직접관찰 소견	-일상생활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50
총점 :							

〈표 III-6〉 식생활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 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수저를 사용하여 음식을 먹을 수 있다. - 포크, 숟가락, 젓가락 등 도구를 사용하여 스스로 식사 가능						
2	병이나 캔을 열거나 조미료 등을 사용할 수 있다. - 원하는 것을 돌려서 열거나 따고 도구를 제자리에 두는 등						
3	컵을 사용하여 음료를 마실 수 있다. - 흘리지 않고 물 또는 음료를 원하는 만큼 마시기 등						
4	편식하지 않고 골고루 식사할 수 있다. - 주어진 메뉴를 먹는 등						
5	추가 배식을 원할 경우 욕구를 표현하여 배식을 받을 수 있다. - 원하는 양을 적절한 양으로 먹기, 배부르면 식사 마치기 등						
계							
1 : 수행가능 (도움 없이 스스로 할 수 있음) 2 : 경도 도움 필요(요청에 따라 약간의 도움) 3 : 중등도 도움 필요(경우에 따라 요청이 없어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대체로 도움을 받아야 수행가능) 5 : 항상 도움 필요(모든 경우에 돕는 사람을 필요로 함)							
담당인력 직접관찰 소견		-식생활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표 III-7〉 의사소통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항	항목	수행도					점수
		1	2	3	4	5	
1	언어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 간단한 말을 듣고 이해하여 적절하게 수행						
2	다른 사람들과 인사 나누기가 가능하다. -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언어와 제스처, AAC로 인사 나누기 등						
3	적절한 표현으로 요구나 부탁할 수 있다. - 상황과 목적, 예의에 맞게 요구 또는 부탁함						
4	두 가지 연속된 안내를 듣고 따르기가 가능하다. - 옷을 벗어서 옷걸이에 걸기 등 두 가지 연속행동 등						
5	표정, 손의 움직임이나 신호, 제스처와 같은 몸짓으로 전달되는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6	그림이나 사진을 보고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되는 그림이나 질문에 대해 적절한 반응을 함						
7	문장 수준에서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 - 제시되는 문장을 듣고 적절한 반응을 함						
8	얼굴표정, 팔과 손의 움직임 및 자세 등과 같은 몸짓을 이용하여 의미를 전달 할 수 있다.						
9	단어 수준으로 상황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10	문장 형태로 상황이나 느낌, 욕구를 표현할 수 있다.						
11	대화를 시작하고 마무리 짓는 것이 가능하다. - 대화 내용에 대한 표현을 함 (수용, 동의 반대 등)						
12	상대방의 질문에 간단히 답할 수 있다. - 상대방이 질문에 했을 때 그에 상응하는 짧은 대답 가능						
13	필요할 경우, 간단한 질문을 할 수 있다. - 궁금한 내용에 대해 의문사 질문을 함						
14	위급한 상황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 위험 상황을 이해하고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에게 알리는 등						
15	전화기를 사용하여 대화할 수 있다. - 전화기를 다룰 수 있으며 적절한 표현이 가능						
16	자신의 특성에 적합한 대체의사소통 장치를 사용할 수 있다. - AAC를 사용하여 자신의 욕구, 감정, 상황을 표현함						
17	싫은 것을 표현하거나 거부하기를 할 수 있다. - 구어적으로 싫은 것을 거부하는 반응을 보임						
18	상대방에 따라 적절히 상호작용할 수 있다. - 연장자와 아동을 구별하고 존대어를 쓰거나 보호 행동 가능						
19	다른 사람과 있을 때 예절을 지킬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말할 때 듣거나 주의를 기울임						
20	친구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다. - 좋아하는 활동을 동료와 함께 하거나 그 상태를 유지함						
계							
1 : 수행가능, 2 : 경도 도움 필요, 3 : 중등도 도움 필요, 4 : 중도 도움 필요, 5 : 항상 도움 필요							
담당인력 직접관찰 소견	-의사소통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100
총점 :							

〈표 Ⅲ-8〉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

작성자 : 사회재활교사 김00							이용자 : 신**						
문 항	항목	발생빈도					점 수	강도					점 수
		5	4	3	2	1		1	2	3	4	5	
1	자신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는 행동을 한다. - 자신을 때리기, 머리 부딪히기, 물기, 꼬집기 등												
2	다른 사람을 고의적으로 해치는 행동을 한다. - 타인을 물거나 발로 차거나, 때리기 등 상처 입힐 수 있는 행동												
3	사회적으로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 - 고함지르기, 침 뱉기, 욕하기, 따라다니기, 갑자기 만지기 등												
4	심한 집착과 반복적인 행동을 한다. - 옷을 벗어버리거나, 특정 물건 또는 사람에게 집착하기, 먹으면 안 되는 것을 입에 넣기, 특이한 행동을 반복하기 등												
5	일반적이지 않은 소리를 내거나 큰 소리로 우는 행위를 한다. - 참기 어려울 정도로 큰 소리를 내거나, 반복적인 소리를 내기도 하며, 지속적으로 통곡함												
계													
• 발생빈도 1 : 전혀 없음 2 : 한 달에 1~10회 3 : 일주일에 1~10회 4 : 하루에 1~10회 5 : 매 시간 1~5회 • 강도 : 1 : 타인과 한 공간에 지낼 수 있을 정도 (인지할 만한 문제없음, 중재 또는 지원 필요 없음) 2 : 대체로 양호하나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문제행동 (경우에 따라 위험성이 있는 행동) 3 : 문제행동의 발생빈도가 높지 않으나 위험성이 있는 명백한 문제행동 4 : 발생빈도가 높으며 위험성도 심각하여 일상생활이 제한적인 정도 5 : 매우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으로 일상생활이 극도로 제한적이며 절대 공간분리가 필요한 정도													
담당인력 직접관찰 소견	-도전적행동(어려운 행동) 영역의 점수가 낮고 -중점돌봄을 받아야 하는 이유 -주간보호전담반에 입소 우선순위가 높은 이유 등 작성												- /100
총점 :													

2. 활용방안 및 제언

□ 경기도 내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대상 판단 도구로 활용

- 경기도에서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더 중증인 장애인을 돌봄으로써 가족과 장애인 당사자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정책으로서 확산 가능
 - 향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을 지정할 때, 입소 장애인을 선정할 때 시군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에 명기하여야 할 것임
 - 가능하면 신규 이용자 중 선정하도록 권고하며 이를 위해서는 기준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더 많은 경우 선정에서 우선자격을 부여해야 함
- 우선되어야 할 사항은 지금까지 공통적인 기준으로 삼았던 1차 구분 이후 기준을 이용하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함
 - 행동조절을 위한 약을 복용하는지 여부, 타 기관에서의 입소거부로 인해 시설이용을 해본 경험이 없는 경우, 관찰일지 상 도전적 행동이 심하다는 판단 등의 공통점으로 스크리닝 후 판단함

□ 제언

- 경기도 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 전담반 운영 시설 선정을 위한 기준이 모호한 측면이 있음.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전담반을 운영할 시설을 지정할 때 심의에서 보다 신중하게 선택해야 할 것임
 - 기준의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고 전담반에 입소해야 할 중증장애인의 비율을 감안하여 전담반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시설 현황, 장애인 대기현황, 접근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관련 시스템을 개발·운영
 - 부산시의 경우와 같이 주간보호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애인과 가족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음
 - 이미 구축되어 있는 플랫폼(예: 경기복지플랫폼 <https://ggwf.or.kr>)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전담반 운영을 통해 중증장애인 대상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설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중증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에 대한 정규직화와 안정적 인건비 제공 등 경기도와 시군 차원 지원이 필요함
 - 전담반 운영은 구분된 공간이 필요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을 위한 환경개선 비용을 함께 지원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입소기준의 타당성 및 구체성 확보를 위해 현장 전문가들의 객관적 검토를 거쳐 활용하는 것을 제안함
 - 점수화 방식, 정도파악의 정당성, 심의위원회 활용 등 의견수렴 통해 실용적인 방안 마련이 가능할 것임
 - 점수의 배점은 내용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평균을 내서 합산할 것인지 총 점수를 합산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음
 - 중증장애인 돌봄 또는 도전적 행동으로 인한 부담의 수준에 대한 가중치 부여 등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은 추가 연구를 진행하거나 현장과의 논의 더 필요함

참고문헌

- 경기도 내부자료(2023). 2023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선정계획.
- _____ (2023). 경기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중증장애인 전담반 운영 실태조사.
- _____ (2023). 경기도 장애인 정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1~'23).
- 한국장애인주간보호시설협회 내부자료(2023).
- 보건복지부·사회보장정보원(2016), ICF 국제 기능·장애·건강 분류.
- 보건복지부(2023). 2023년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
- 서울시·전북대학교(2019). 최중증 성인 발달장애인 낮활동사업 운영매뉴얼.
- 우성기(2022). 국제 기능·장애·건강분류 기반 중증발달장애인 선별·평가척도 축약형을 위한
구성타당도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대학원.
- 이상봉·허남욱(2021).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ADL/IADL)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
산학기술학회논문지(JKAIS), vol.22, no.4, pp.419-429.
- J. W. Won(2002). *Korea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and Korea Instrumental Activities of Daily Living Scale*. Annals of geriatric medicine and research 6 (2) : 107~120.
- Sheila M Eyberg(2012). 부모-아동 상호작용 코딩시스템 매뉴얼(두정일·이정숙, 역). 서울: 시그마프레스.
-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index/index.do> 시군구별, 장애정도별, 성별 등록 장애인 수, 2019~2022.(2023.8.13.검색)
-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https://www.law.go.kr/>
- 부산광역시 장애인주간보호시설 통합정보시스템 www.bsrehab.or.kr
- 웹페어뉴스(2023.4.3.) 서울시, 최중증 발달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http://www.welfare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90896>

경기복지재단 GGWF REPORT 2023-13

경기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전담반 입소기준 연구

발행일 2023년 8월

발행인 대표이사 원미정

발행처 경기복지재단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179) ☎ 16207

Tel. 1577-4312 Fax. 031-898-5937

Homepage. ggwf.gg.go.kr